

#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동향

(인도네시아 영화법 개요 및 함의)

2023년 2호

#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INDONESIA

2023년 2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 이슈	인도네시아 영화법 개요 및 합의	영화 영화법 외국인 투자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3.03.27.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 심층 이슈

### I. 인도네시아 영화법 개요 및 합의

#### 작성 순서

1. 인도네시아 영화법 배경 및 개요
2. 인도네시아 영화법 주요 내용
3. 결론 및 합의

### 1 인도네시아 영화법 배경 및 개요



#### 1. 배경

-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최초의 인도네시아 영화가 제작된 192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1950 년대에 들어서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반영하는 대중 영화의 제작과 함께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함
- 이후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정치적 불안정, 검열, 제한된 자금 지원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는 등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면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화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법 2009 년 제 33 호’를 비롯하여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옴. 이 법은 영화산업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영화를 규제하고 분류하기 위해 영화심의기관 설립
- 그러나 영화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제한적인 자금과 인프라 문제 등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화산업에 보다 포괄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고 영화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화법 2019 년 제 6 호’를 발표함
- ‘영화법 2019 년 제 6 호’는 새로운 영화 분류 체계의 확립, 영화산업을 위한 여러 정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세금 감면과 영화 제작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같은 영화 제작자들에게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변화를 도입함
- 한편, 산업으로서 영화의 경제적 측면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은 2020 년 제정된 ‘일자리창출법(옴니버스법) 2020 년 제 11 호’에서 더욱 분명해짐. 일자리창출법(옴니버스법) 2020 년 제 11 호’ 중 ‘투자운용기관 및/또는 투자운용기관 소유 사업체와 관련한 거래의 과세 처리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 49호'에서 영화산업은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100%)됨. 그러나 외국인의 영화 제작은 인도네시아 법인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 2. 개요

- 인도네시아 영화법 주요 내용은 아래 법안들을 기초로 작성됨
  - .. 영화에 관한 법률 2009년 제 33호
  - ..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9년 제 141호
  - .. 영화배급, 상영,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9년 제 34호
  - .. 영화기록물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9년 제 41호
  - .. 외국제작자의 국내 영화제작 로케이션 허가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8년 제 48호
  - .. 인도네시아 영화 및 국내자원사용 우선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9년 제 30호
  - .. 영화심위원회에 관한 정부령 2014년 제 18호
  - .. 영화 및 영화광고의 심의지침 및 기준, 시청연령 분류 및 배급 철회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 2019년 제 14호
  - ..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한 정부 규정 2021년 제 34호
  - .. 일자리창출법 2022년 제 11호
  - .. 창조경제에 관한 정부 규정 2022년 제 24호
  - .. 투자운용기관 및/또는 투자운용기관 소유 사업체와 관련한 거래의 과세 처리에 관한 대통령령 2021년 제 49호
  - .. 2018~2025 국가창조경제발전기본계획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 142호
  - .. 사업자 등록 및 영화사업 허가 신청에 관한 교육문화부 장관령 2017년 제 39호
- 인도네시아 영화법의 주요 항목은 1) 영화활동 및 영화사업, 2) 영화심의, 3) 영화 배급, 수출입, 4) 행정제재 및 형사규정, 5) 저작권과 자금, 6) 국내 자원 활용 우선, 7) 외국제작자의 장소 사용, 8) 외국인 투자 9) 결론 및 합의 등으로 구성

## 2 인도네시아 영화법 주요 내용



### 1. 영화활동 및 영화사업

#### ✔ 사업허가

- 사업허가는 ‘영화 상영사업’, ‘영화 수출사업’, ‘영화 수입사업’ 등 3 가지 사업 유형에 대해 장관이 발급
- ‘영화판매 및/또는 대여업’, ‘영화상영업’ 등 두 가지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군수 또는 시장이 사업면허 부여
- 사업허가에는 TV 방송 또는 정보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는 영화상영업 허가는 포함되지 않음

#### ✔ 영화 제작

- 영화제작 활동주체는 개인, 단체, 정부 및 지방정부가 포함되며, 영화제작 사업주체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는 사업체
- 영화제작 사업주체의 영화 제작은 영화 제목, 이야기 내용 및 영화 제작 계획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영화 제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영화제작 신청은 무료이며, 근무일 기준 최대 3 일 이내에 등록됨. 영화제작 사업주체는 영화제작 등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영화제작을 할 의무가 있음
- 영화제작 시 영화광고<sup>1)</sup>를 제작할 수 있으며, 영화광고는 영화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영화제작은 스토리 영화 또는 비 스토리 영화의 형태로 제작. ‘스토리 영화’는 실험 영화와 애니메이션 영화를 포함하여 스토리가 포함된 모든 영화이며, ‘비 스토리 영화’는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영화(광고 자료가 포함된 영화), 실험 영화, 예술 영화, 교육 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 등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영화를 의미함

#### ✔ 영화 상영

-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영화관에 있는 모든 스크린의 총 상영 시간의 50% 이상을 1 인의 영화 (제작/배급/수입)사업주체의 영화를 6 개월 연속 상영할 수 없음
- “6 개월 연속 영화 상영 시간의 최소 60% 이상을 인도네시아 영화로 상영할 의무”는 다음과 같이 계산
  - 1 개의 스크린을 가진 1 개의 영화관을 소유한 영화상영 사업주체의 경우, 영화관에서 스크린 사용의 총 상영 시간에 대해 비율이 계산됨
  - 1 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영화관 1 개를 소유한 영화상영사업주체의 경우, 모든 스크린의 총 상영 시간에 대해 비율이 계산됨
  - 1 개 이상의 영화관을 소유한 영화상영 사업주체의 경우, 모든 영화관에 있는 모든 스크린의 총 상영 시간에 대해 비율이 계산됨
- “6 개월 연속 영화 상영 시간의 최소 60% 이상을 인도네시아 영화로 상영할 의무”는 품질이 없는 영화 상영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1) ‘영화광고’란 포스터, 스틸 사진, 클리셰, 예고편, 배너, 팸플릿, 브로슈어, 광고판, 현수막, 플더, 출판물 및 기타 홍보수단

- TV 방송을 통한 “6 개월 연속 영화상영 시간의 최소 60% 이상을 인도네시아 영화로 상영할 의무”라는 용어는 1 개의 TV 방송 기관을 의미
- 21 세 이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TV 방송을 통한 영화상영은 현지시각으로 23:00~03:00 까지만 가능. 상영시간에 상영되는 영화광고는 상영되는 영화와 연령기준이 동일해야 함



[그림 1] 인도네시아 최초 영화 'Darah dan Doa (The Long March)'<sup>2)</sup>

#### ❖ 독점 금지

-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1 인의 영화제작 사업주체 또는 1 인의 영화상영 사업 주체 또는 1 인의 영화수입 사업주체의 영화를 6 개월 연속 50% 이상 상영하여 독점 및/또는 불공정 사업 경쟁을 초래해서는 안 됨
- 영화상영 영화 사업주체는 영화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영화 사업주체와 독점 관행 및/또는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초래하는 영화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금지
- 영화 사업주체는 직간접적으로 수직 통합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영화사업을 소유할 수 없음. 그러나 자체 제작 영화의 배급 및 수출하는 영화 사업주체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수직통합’이란 두 가지 이상 유형의 사업으로 구성된 상위에서 하위로 영화 공급을 받는 소스 및/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영화 공급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의미

## 2. 영화심의

- 배급 및/또는 상영되는 모든 영화 및 영화광고는 심의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심의 수행 및 인증서 발급을 위해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영화심의원<sup>3)</sup> 설립
- 영화심의원의 위원은 시민위원 12 인과 정부위원 5 인 등 총 17 인으로 구성되며, 장관이 지명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예비위원이 선정되면 국회와 협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영화심의원의 위원 임기는 4 년이며, 1 회 재임 가능하며, 임명 및 해임은 대통령이 결정. 영화심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지방정부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음
- 영화심의원의 업무는 1) 일반 대중에게 배급 및/또는 상영되기 전에 영화 및 영화광고를 심의하

2) 1950년 발표된 'Darah dan Doa'는 인도네시아 제작사인 Indonesian National Film Company(Perfini)가 제작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영화. 이 영화의 첫 촬영 날짜인 3월 30일은 '국립 영화의 날'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옴

3) 영화심의원(LSF, Lembaga Sensor Film)

- 고, 2) 일반 대중에게 배급 및/또는 공개될 영화 및 영화광고의 제목, 주제, 이미지, 장면, 사운드 및 번역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수행
- 영화심의위원의 권한은 1) 시청연령 분류 결정, 2) 심의기준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영화 및 영화광고의 수정 요청, 3) 수정 영화 및 영화광고 재심의, 4) 심의인증서 발급 및 취소, 5) 영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영화활동주체 또는 영화 사업주체에 대해 정부에 행정제재 제안, 6)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영화심의 및 영화광고에 대한 정기보고
  - 영화제작을 위해 필요한 허가 및 담당 부처는 아래와 같음
    - 영화제작 알림표지판: 교육문화부
    - 영화수입 추천서: 교육문화부
    - 외국영화 촬영지 및 필름 사용 허가서: 교육문화부
    - 영화심의 인증서(STLS, Surat Tanda Lulus Sensor): 영화심의위원
  - 심의 후 심의된 영화 및 영화광고는 다음과 같이 영화 시청연령 분류
    -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SU)
    - 13 세 이상의 시청자(R13)
    - 17 세 이상의 시청자(D17)
    - 21 세 이상의 시청자(D21)
  - 심의기준은 영화 콘텐츠와 영화광고 공히 1) 폭력, 도박 및 마약, 2) 음란물, 3) 민족, 인종, 집단 및/또는 계층, 4) 종교, 5) 법, 6) 인간존엄성, 7) 영화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심의하고 평가
  - 심의된 영화는 스토리 영화와 비스토리 영화로 구분되며, 영화광고는 포스트, 스틸사진, 슬라이드, 클리셰, 예고편, 배너, 팸플릿, 브로슈어, 광고판, 현수막, 폴더, 플래카드, 출판물 및 기타 홍보수단 등으로 구성됨

### 3. 영화 배급, 수출입

- 영화배급은 영화배급 사업주체가 영화상영 사업주체에게 하며, 영화배급은 협력계약으로 진행하며, 협력계약은 인도네시아어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
  - 협력 당사자
  - 협력 형태
  - 영화 홍보 의무를 포함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설명
  - 영화 사본의 수
  - 상영 스크린 수 및 상영 시간
  - 상영 날짜와 시작일
  - 관객 수 보고 시기 및 방법
  - 스크린 수 또는 상영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기 위한 조건으로 최소 관객 수에 관한 규정
  - 영화 사본 및 심의인증서 제출 마감일 등의 내용 포함

- 장관은 외국 문화의 지배를 막기 위해 수입영화와 인도네시아 영화의 비율을 유지하여 수입영화를 제한할 의무가 있음. 수입영화와 인도네시아 영화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영화에 대한 제한은 관객 수 자료수집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의 평가를 기반으로 함
- 영화수입 사업주체는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영화를 제외하고 수입영화를 인도네시아어로 더빙할 수 없으며,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영화의 더빙은 장관의 허가를 취득한 후 진행(아래 해당 법령 참조)

“영화법 2009 년 제 33 호”

제 43 조 영화 사업주체는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영화를 제외하고 수입영화를 인도네시아어로 더빙할 수 없다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09 Tentang Perfilman”  
Pasal 43 Pelaku usaha perfilman dilarang melakukan sulih suara film impor ke dalam bahasa Indonesia, kecuali film impor untuk kepentingan pendidikan dan/atau penelitian

#### 4. 행정제재 및 형사규정

-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 대중에게 고의로 영화를 배포, 판매, 대여 또는 상영한 자는 그 내용이 제 6 조4)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Rp 10,000,000,000(백억 루피아)이하의 벌금 부과
- 독점 관행 및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초래하는 상영 시간의 50%를 초과하는 특정 영화의 배급 또는 수입한 영화제작 사업주체의 영화만 상영한 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Rp 100,000,000,000(천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 부과
- 영화 사업주체와 계약하거나 다른 영화 사업주체가 영화물을 제공 또는 수취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독점 관행 및/또는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Rp 100,000,000,000(천억 루피아)이하의 벌금 부과
- 상기 범죄 행위가 법인에 의해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범한 경우 벌금의 1/3 이 가산되며, 상기 범죄 행위가 법인에 의해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저질러지는 경우 법인(기업)과 법인(기업) 경영진에게 처벌 부과. 상기 처벌과는 별도로,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 박탈 및 영업 허가 취소 등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5. 저작권과 자금

- 저작권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28 호의 저작권에 관한 규정과 관련, 영화(영화 작품의 한 형태)는 창작물로 분류될 수 있음. 저작물로서의 영화의 법적 보호 및 사용 범위에는 경제적 권리,

4) a. 대중에게 폭력 및 도박,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기타 중독성 물질의 남용을 조장하도록 장려, b. 포르노 등 선정적 내용 강조, c. 집단, 민족, 인종 간 및/또는 계층 간 갈등을 유발, d. 모욕, 경멸 및/또는 종교적 가치를 더럽히는 행위, e. 일반 대중이 법에 반하는 조처를 하도록 장려, f.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림

경제적 권리의 활용 및 상업적 사용이 포함됨

- 저작권법 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저작권을 신탁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은 영화를 포함한 저작물의 형태는 보증 또는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됨. 이 조항은 '신탁 보증에 관한 법률 제 42 호(1999 년)'에 근거한 신탁 보증에 관한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됨
- '신탁 보증법 제 1 조 2 항'에 "수탁자 보증은 유형 및 무형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보증 권리로 서, 특히 1996 년 법률 제 4 호에 언급된 저당권에 관한 부담은 수탁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저작권에 관한 보증(담보)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법 제 16 조의 이행은 그 당시 저작권 금융 계획을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함. 더욱이 금융기관에 자금 조달을 신청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 있지만, 무형 객체(저작권)의 경우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 없음
- 한편, '창조경제에 관한 정부 규정 2022 년 제 24 호'에는 "은행 금융기관 및 비은행 금융기관은 지적자산을 채무담보의 대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영화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활동주체들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

## 6. 국내자원 활용 우선

- 인도네시아의 국익을 보호하고 인도네시아 영화의 상영 및 배급 기회를 우선하기 위해 국내자원 사용 우선 의무 부여
- 영화 활동주체는 영화제작활동, 영화기술서비스, 영화배급활동, 영화상영활동, 영화감상활동, 영화기록물관리를 통해 인도네시아 영화를 우선해야 하며, 영화 사업주체는 영화제작사업, 영화기록서비스사업, 영화배급사업, 영화상영사업, 영화판매 및/또는 영화대여사업, 영화기록물사업 및 영화수입업을 제외한 영화수출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영화를 우선해야 함
- 국내자원사용 우선 조항에는 1) 인도네시아 영화인력, 2) 촬영지로서의 인도네시아 자연, 3)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재료 및/또는 제품, 4) 인도네시아에서 제공되는 제작 관련 서비스, 5) 인도네시아에서 제조 및/또는 사용 가능한 장비, 6) 인도네시아의 영화제작 과정을 지원하는 시설, 7) 인도네시아 전역 지역 문화재 등이 포함됨
- 인도네시아 영화인력은 영화 분야의 역량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역량인증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기능하는 산업 협회, 전문 협회 및/또는 대학의 인증기관에서 발급
- 인도네시아 영화인력이 없는 경우, 외국에서 발급된 영화 분야 인증서를 보유한 외국인 인력을 이용하여 영화 제작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인력은 인도네시아 영화인력과 공동으로 작업
- 서비스, 장비 및 시설 등 영화 및 영화광고에 사용되는 자원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화제작 서비스, 제작 장비 및 기술 서비스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에서 구비되지 않은 경우 면제
- 영화 및 영화광고 제작 시 인도네시아어 또는 지역 언어의 사용 우선

## 7. 외국제작자의 로케이션

- 인도네시아 내 장소를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외국제작자의 로케이션 허가는 장관이 부여
- 외국제작자는 인도네시아의 영화제작 사업자와 협력해야 하며, 영화제작 사업자는 영화 제작 사업을 운영하고 영화 자료에 등록되어 있으며, 영화사업등록증이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
- 외국제작자의 로케이션 허가는 다음을 첨부하여 제출
  - · 사업체 형태의 외국제작자의 회사 프로필
  - · 영화 제작에 관련된 모든 외국 영화 제작자의 이름과 영화 제작에서의 직책
  - · 영화 제작에 관련된 모든 외국 영화 제작자의 이력서
  - · 관련된 모든 외국 영화 제작자의 여권 사본
  - · 현지 상대방의 영화사업 등록증
  - · 촬영 일정
  - · 영화 촬영 장소 및 영상 기록물
  - · 사용 장비 목록
  - · 작업 계약과 관련된 협력 진술서
  - · 규범, 관습, 법령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진술
- 외국제작자는 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장관에게 로케이션 허가 신청
- 해외 인도네시아 대표의 장은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영화 진흥분야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로케이션 허가 신청서 전달. 해외 인도네시아 대표의 로케이션 허가 신청은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경유
- 영화 진흥분야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필요한 문서가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확인된 후 근무일 기준 7 일 이내에 장소 사용허가 발급. 로케이션 허가는 사용허가에 명시된 위치 및 일정에만 적용되며, 로케이션 허가는 신청수수료는 무료
- 영화 촬영 장소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외국제작자는 영화진흥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외 인도네시아 대표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장소 및 촬영 일정 변경에 대한 통지는 새로운 장소에서 촬영하기 7 일 전까지 제출
- 영화진흥 분야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촬영에 사용될 장소에 대해 권한이 있는 관할 당국 및/또는 지방정부에 통지로 장소 사용허가서 사본 송부

## 8. 외국인 투자

-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으로서의 영화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창출법(옴니버스법) 2020 년 제 11 호'와 '투자운용기관 및/또는 투자운용기관 소유 사업체와 관련한 거래의 과세 처리에 관한 대통령령 2021 년 제 49 호'를 통해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외국인 투자에 전면 개방(100%)됨
- 단,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영화에 대한 투자는 인도네시아 법인과 협력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국내자원(서비스, 장비, 시설 등)을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임. 국내자원 중 서비스

부문은 인력 즉, 인도네시아 영화산업 근로자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에서도 ‘정부규정 2021 년 제 34 호’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TKA)는 기술 이전 등의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인이 고용하는 형태며 고용주인 인도네시아 법인은 노동부장관 혹은 장관이 임명한 공무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IMTA)를 받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사용계획(RPTKA)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방문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화 촬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인도네시아 보증인이 있어야 하며, 보증인 이름의 최소 Rp200,000,000(이억 루피아)의 은행 거래내역서<sup>5)</sup>를 제출해야 함

---

5) 이민법 2021년 제36호 7조

### 3 결론 및 함의



#### 1. 결론

- 인도네시아 창조경제<sup>6)</sup>의 존재와 발전은 현재 세금, 수출 외환, 천연자원 제품 등과 같은 전통적인 원천 외에도 경제 성장, 특히 국가 세입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대안 중 하나임. 2020년 관광창조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창조산업의 기여가 1,153조 4천억 루피아임
- 창조경제 분야에서 영화산업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핵심 근간임. 영화산업은 매년 점진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창조경제 상위 6개 핵심 분야에 포함
- 영화법 2009년 제 4조에 근거한 영화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 경제적 기능과 창작의 장려는 인도네시아의 영화산업과 생태계는 창조경제의 존재와 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산업으로서 영화의 경제적 측면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은 최근 영화법의 여러 규제 개념을 변경한 일자리창출법(옴니버스법) 2020년 제 11호의 제정과 맞물려 있음
- 인도네시아는 고용창출법 2020년 제 11호와 정부령 2021년 제 49<sup>7)</sup>호의 제정으로 인해 영화 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산업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되며 전면 개방됨

#### 2. 함의

- 인도네시아 내 해외에 본사를 둔 온라인플랫폼의 영화는 인도네시아 영화심의원의 심의 없이 상영되고 있음. 현재 영화심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논의해 일부 콘텐츠에 연령 및 위치 제한 등을 지정해 인도네시아 내 청취를 제한함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의 인도네시아 진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영화법<sup>8)</sup>에 따르면,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영화를 이외에는 수입영화의 인도네시아어 더빙이 불가함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수입영화를 위한 영화심의회 심사 기간은 접수 후 약 2주(14일) 정도로 상당히 빨라졌으며, 이에 따라 배급에서 상영까지 약 평균 1.5~2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Bicara Box Office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영화는 2022년 12월 18일 현재 관람객 5,3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2019년 팬데믹 이전의 5,190만 명을 넘어서며 급진적으로 회복 중

6) 창조경제는 인간의 지적 창조성에서 태어난 독창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의 아이디어 또는 아이디어로부터 부가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며, 과학 기술, 기술, 기술, 문화유산(2018년~2025년 국가창조경제개발 마스터플랜에 관한 대통령령 제142호 제1조 제1항)

7) 투자운용기관 및/또는 투자운용기관 소유 사업체와 관련한 거래의 과세 처리에 관한 대통령령 2021년 제49호

8) 영화법 2009년 제33호 제43조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김영수 센터장	+62-21-252-3151	yskim@kocca.kr
김은지 주임	+62-21-252-3151	milykim@kocca.kr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동향

2023년 2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김영수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장) 김은지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주임)

집필자 이현석 (PT Daehong Communications Indonesia 탐장) 이철웅 (PT Daehong Communications Indonesia 법인장)  
이화진 (PT Daehong Communications Indonesia 탐장)

발행인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2023년 03월 27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